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90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백선희 · 이해민 · 박희승
황운하 · 황명선 · 정준호
김상욱 · 이학영 · 강준현
강경숙 · 김영호 · 손명수
서왕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위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의 제목 중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을 “방위사업계약 체결 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계약목적물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경우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 받은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u>낙찰자</u>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제46조의3(방위사업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 ① ----- -----<u>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계약에</u> <u>따른 낙찰자</u>----- ----- -. 1. 계약목적물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경우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으로 포상 받은 경우 ② (현행과 같음)